수의사 일제신고 공고

「수의사법」 제14조(신고), 「수의사법 시행규칙」 제14조(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)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일제신고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17일

대한수의사회장

□ 신고기간

○ 2022년 7월 18일 ~ 9월 15일 (2개월간)

□ 신고대상

○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

□ 신고방법

○ 온라인 접수 :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(kvma.or.kr)에 접속하여, 수의사 신상신고서 작성 후 접수증 발급

○ 우편 접수 :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(kvma.or.kr)에서 신상신고서를 다운받아 사진 1매(가로 3cm, 세로 4cm, 상반신, 탈모)와 함께 대한수의사회(중앙회 혹은 소속지부)에 등기발송 후 접수증 수령

※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우편물 수령 주소지와 다른 경우 각 시·도지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참고사항

○ 유학 등 단기 국내 미거주자는 가족 등 관련인의 대리 신고 가능

○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

○ 신상신고 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필수